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경 제 도 시 위 원 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경제지원과장)
- 제출일자: 2023. 11. 3.
- 회부일자: 2023. 11. 3.
- 검토기간: 2023. 11. 3. ~ 2023. 11. 7.(5일간)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제공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 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재계약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수탁기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각 상인회
- 위탁사무: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나. 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주차 면수	계약기간	수탁기관	비 고
서남신시장 공영주차장	달구벌대로329길 10	1,418㎡	40면	2024. 1. 1. ~ 2026. 12. 31.	전통시장 상인회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달구벌대로329길 17	904㎡	30면			
월촌역시장 공영주차장	송현로12안길 38	948㎡	26면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본리동 110-5,6번지	2,586㎡ (연면적)	103면			지상1층 지하1,2층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용산동 448-6번지	1,249㎡	36면			

4.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6조, 제18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6조(성과평가) 및 제18조(재계약)의 타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의 내실화로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형식적 적법성과 재계약의 절차 또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성과평가)

-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계약)

-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
-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